

1. 개정이유

행정처분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 부과차수의 누적 적용에 따른 제재 수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을 정비하는 한편,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안 제2조제2항)
- 나. 가중처분의 위반행위 적용 시점을 “적발된 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가중처분 적용 차수를 명확히 하며, 가중처분 누적차수 적용 제외기간 신설(안 별표 4 제1호나목 및 다목)
- 다.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면허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면허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안 별표 4 제2호나목6))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기상산업진흥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0. 00. ~ 0. 00.) 결과,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협의 전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을 “최근”으로 하고,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4 제2호나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상예보사나 기상감 정사가 법 제18조제3	법 제20조 제1항제6호	면허정지 1 개월	면허정지 2 개월	면허취소
-------------------------------	------------------	--------------	--------------	------

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중처분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 제1호나목 후단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의 면허 취소 및 면허 정지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별표 4 제2호나목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1년을 초과하는 면허정지는 면허정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4 제2호나목6)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다만,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별표 4 제2호나목6)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① (생략)	제2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 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 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 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 ----- ----- ----- -----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